

문서번호	감사실-2875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20.04.29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52호

★대리	팀장	감사실장	상임감사	이사장
협 조				

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2020.

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(제 안 요 지)

1. 제안이유

-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처분에 대한 수용성 및 이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기구 운영 필요
- 서울시설공단 중장기 전략감사 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

2. 주요내용

- 감사결과 처분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근거조항 신설 (안 제15조)
 - 감사결과 시정요구, 징계 등 처분에 대한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근거 조항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

- 중장기 전략감사 계획('19.12.30),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('20.3.13)
- 규정관리규정 제7조(입안) 및 제10조(절차)

나. 절 차 : 이사장 방침 후 공포·시행 * 차기 이사회 시 개정사항 보고

- 규정관리규정 제10조 ① 다음 각호의 규정에 대한 개폐와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개정안의 내용이 법령, 정부지침, 정관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거나 그 개정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생략하고 이사장 결재로 개폐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다음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4항 및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 각 호에 의한 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처분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⑤ 감사처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< 부 칙 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시정요구 등) ① ~ ③ (생략)	제15조(시정요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1항 각 호에 의한 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처분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	⑤ 감사처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